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2024. 10.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조사 개요

1. 조사경과	1
2. 결과요약	2

II. 조사 내용

1. 국가대표 지원

1) 부상 진단 및 관리	8
2)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8
3) 선수촌 생활(외출·외박, 사적 지시, 새벽/산악 훈련)	9
4) 단식과 복식 맞춤훈련	11
5)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참여	13
6) 국가대표 소집기간	14
7) 국제대회 출전 기회 불균형	14
8)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강화	15

2. 제도개선

1) 국제대회 출전 제한

- (1) 국가대표 자비 출전 제한 16
- (2) 비국가대표 출전제한 (중간브리핑 후속) 17

2) 협회 후원계약 (중간브리핑 후속)

- (1) 후원용품의 사용범위 19
- (2) 선수 후원사 유니폼 로고 노출 21
- (3)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 23
- (4)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달성 시 보너스 지급 24
- (5) 후원사 선정 수의계약 26

3) 복식 국가대표 선발방식 (중간브리핑 후속) 27

4)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중간브리핑 후속) 29

5)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와 결격사유 (중간브리핑 후속) 31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1)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중간브리핑 후속)

- (1)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 32
- (2)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36

2)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중간브리핑 후속)	38
3) 국고보조금으로 주류 구매	39
4) 상임심판 제도 운영 중단 (중간브리핑 후속)	40

4. 협회 운영실태

1) 협회 임원에게 성공보수 지급 (중간브리핑 후속)	43
2) 회장과 전무이사의 2024년 설날 명절상여금 수령	45
3)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자원 부적정	46
4) 규정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 (중간브리핑 후속)	48
5) 후원물품 관리 부실	49
6) 협회 직원 국내대회 출장 시 일비(수당) 과다 지급	51
7) 협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52
8)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일부 중간브리핑)	55
9)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및 신규 직원 채용 시 절차 누락	57

5.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58
-----------------------	----

I. 조사개요

1 조사경과

-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단(체육국장, 체육정책과장 외 18명**)은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
 - * 부상관리,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해외사례 비교), 후원용품 사용범위, 선수연봉, 프로토콜, 국제대회 출전 제한 등
 - ** 문체부 8명, 관계기관 4명(윤리센터 3, 스포츠과학원 1), 회계법인 4명, 노무법인 2명
- 국가대표 훈련 및 부상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총 51명의 선수단 중 36명** 의견 청취
 - * ① 부상관리 체계, ②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③ 프로토콜(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너, 선수촌 생활 등), ④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⑤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⑥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
 - ** 15명은 국제대회 일정/전국체전 준비 등 개인의 의사 존중, 미 실시
 - 선수단 의견은 조사결과 내용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
- 제도개선 과제는 ① 후원계약, ② 국가대표 선발, ③ 국제대회 출전 제한, ④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⑤ 국가대표 징계임.
 - 마케팅 전문가, 실업배드민턴연맹/실업팀 관계자 및 前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 의견 청취 진행
- 보조금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회계법인이 보조금 수행상황 및 협회 회계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노무법인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사실관계 조사
- 최종 발표는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성(9.10 중간 발표 후속조치 포함)

2 결과 요약 (주요사항)

① 국가대표 지원

- ① (부상관리) (1) 부상 진단, 재활치료 관련 매뉴얼이 없고, 그때그때 결정
⇒ 선수의 부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선택권 존중(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 (2) 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회(의료 자문, 대회 의사과견) 유명무실('21년 이후 미개최)
⇒ 의무위원회 활성화 및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 등 자문 기능 강화
- ②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의료인력* 부족으로 특정 시간 몰림 현상 및 선수 불편, 소속팀의 의료지원이 부족한 선수는 진천선수촌 의존
⇒ 입촌 시 메디컬 체크, 진료공간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및 진료시간 연장 추진
* 의사 3(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간호사 3, 방사선사 1, 물리치료사 12(정원 14)
※ (공간) 침대 15개→25개, (인력) 물리치료사 14명→24명, (진료시간) 평일 21시까지→22시까지
- ③ (선수촌 생활) (1)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지도자(감독)의 재량 사항이며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24년 외박 1회 등 과도한 제한
⇒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원칙적으로 허용, 특별한 사정(올림픽 임박 등)에 한정하여 제한(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 (2) <선수간 부조리/청소·빨래·외출 보고 등> 안세영 선수 건의서 전달 ('24.3월) 이후 여자선수단은 거의 사라졌지만, 남자선수단은 잔존
⇒ 선수 간 사적 용무 지시를 금지하는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24.9.23, 대한체육회)된 만큼, '25년부터 정기모니터링(반기별)
- (3) <새벽훈련/산악훈련> '23.4.5부터 의무화된 새벽훈련/산악훈련*에 대해 선수단은 훈련효과 의문 및 부상 우려 등 제기하며 자율성 존중 희망
⇒ 각 종목 선수단이 새벽훈련, 산악훈련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 <새벽훈련> 주 4회(06:00~07:30, 수요일 제외), <산악훈련> 월 2회(금요일 15:00 이후)

- ④ (단식·복식 맞춤 훈련) 선수들은 ▲코치진 부족(1진 위주 관리로 2진 선수 소외), ▲단식과 복식 획일적 훈련, ▲비체계적 과거 훈련방식 답습 지적
 ⇒ 배드민턴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증원 추진*, 영상분석 인력 처우개선 및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단식과 복식 특성에 맞는 맞춤 훈련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등)
 * <현재> 총감독 1명, 코치 7명, 트레이너 4명, 영상팀 1명 → <증원(안)> 총감독 1명, 단식감독 1명, 복식감독 1명, 코치 10명,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
- ⑤ (개인 트레이너) 선수 개인 트레이너 관련 제도는 없으나 사실상 불허
 ⇒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된 대한축구협회 사례(자격요건, 참여형태, 의무팀과의 관계)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 ⑥ (국가대표 소집) 선수들은 과도한 국가대표 소집 기간에 대해 문제 제기*
 ⇒ 선수의 휴식권 보장 및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일정기간 휴식 부여 후 훈련 소집토록 개선(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 “다음 대회가 바로 있는게 아닌한 며칠은 쉴 필요”, “국제대회를 다녀오자마자 소집하는 것은 문제”, “어떤 선수는 365일 중 300일을 국가대표팀에 있었음” 등
- ⑦ (국제대회 출전) 1진 선수는 너무 많은 대회 출전으로(23년 안세영 선수, 18개 대회) 혹사되는(선수생명 단축 우려) 반면, 2진 선수는 출전기회 매우 부족
 ⇒ 1·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관리
- ⑧ (협회-선수단 소통) 협회가 선수단 관련 사항 결정 시 선수단 의견 미청취
 ⇒ ▲선수단 관련 결정 시 지도자 의견 제출 기회 제공(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모든 종목으로 확대), ▲선수위원회(선수의견 제시 통로) 활성화

② 제도개선

- ① (국제대회 출전제한) (1)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국가대표 선수 해외리그/해외초청경기(국가별 인원제한 없음) **자비 출전**(소속팀 지원 포함) **제한** ⇒ 폐지
 (2) 비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 가능

⇒ 문체부가 시정권고(9.12)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이라는 미온적 입장*(9.27), 시정명령 조치

* 무분별한 국제대회 참가 허용은 선수들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참여 의욕 저하 및 우수선수의 국가대표팀 이탈로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 및 유지에 어려움 발생

② (후원계약) (1) <후원용품 사용> 다른 종목과 달리 배드민턴은 경기력에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

⇒ 중간발표(9.10), 국회 지적, 선수단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후원사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신발에 한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 자율권 허용 입장(10.14)

⇒ 용품의 선택권은 특정 선수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선수의 보편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접근, 중간발표대로 시정명령(필요 시 문체부가 조정)

(2) <선수 후원사 유니폼 로고 노출> 국가대표 유니폼에 최대 5개(태극기 제외)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고, 1개는 선수의 권리이나 미보장

⇒ 협회는 '25.3월 후원사 계약 종료 후 규정대로 선수에게 최소 1개의 후원사 로고 노출 허용 입장

⇒ 선수가 후원사와 유니폼 로고 노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5.3월 이전이라도 '예외 인정' 요구(규정대로 준수)

(3) <후원사 선정 수의계약> 협회 마케팅 규정(국가대표팀 메인 후원사는 입찰공고)을 위반하여 '23년 현재 후원사와 수의계약 ⇒ 규정 준수 요구

③ (복식 국가대표 선발) 경기력 70%(파트너와 상대팀을 추첨으로 배정하여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 평가위원 평가점수 30%(공정성 논란) 모두 문제

⇒ ▲주관적 평가 배제, ▲우선 선발범위 확대(선발전 면제범위 : 현재 세계랭킹 8위 → 32위. 32위까지는 최상위 국제대회 자격 출전 가능), ▲주니어 국가대표 별도 선발 (만 23세 이하 등)과 연계하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수 확대(총 38명 → 48명)

④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연봉 학력 차별(고졸 : 5천만원, 대졸 : 6천만원), 연봉 인상률 제한(최초 계약시부터 3년간 연 7% 미만), 긴 계약기간(고졸 : 7년, 대졸 : 5년)

⇒ 실업연맹 개선 추진 중, 문체부 지속 협의 및 점검

<문체부-배드민턴실업연맹/실업팀 관계자 회의 결과(9.25)> ① 연봉 학력 차별 폐지 및 최고연봉 제도 유지*, ② 계약기간 축소(기존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소속 팀과 선수가 협의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금 반환 후 계약 해지 또는 기존 계약 유지 등 선택), ③ 연봉 인상을 제한 폐지, ④ 최고연봉 등 '우수선수 예외 인정' 등 공감대 형성

* 최고연봉이 실업팀 예산책정의 기준점이 되어 경기력이 좋지 않은 선수들의 처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폐지 시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고려하여 유지(대졸 기준으로 일원화)

⑤ (국가대표선수 징계) 협회의 '정당한 지시' 및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 위반 시 징계

⇒ 문체부가 시정 권고(9.12) 하였고, 협회는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규정 개정' 입장(9.27), 이행상황 점검

③ 보조사업수행 점검

① (승강제리그/유청소년 클럽리그) (1) <후원물품 임의배분, 이른바 '페이백'> '23년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1.5억원 임의배분(후원사와 구두계약), '24년은 회장과 사무처가 주도하여 1.4억원 후원물품 계약(서면계약)

⇒ ▲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수사기관(송파경찰서)에 수사의뢰 ▲ 징계요구(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 ▲ 「보조금법」 위반(용도 외 사용, 법령위반) 사항 후속조치*(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제재부가금)

* '23년 : 1.5억원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4.5억원(최대 위반액의 300%,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액 결정), '24년 : 금년 사업 정산 후 반환금액 확정

(2) <후원사와 수의계약>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6.1억원 수의계약

⇒ ▲ 징계 요구(사무처장/사업담당자 2명 징계), ▲ 「보조금법」 위반사항 조치 (위반액 반환, 제재부가금), ▲ '25년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개선

② (협회 임원 운영업체 수수료 지급)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감사가 대표인 회계법인에 '21년부터 '24.8월까지 총 16백만원 지급

⇒ 규정이 '22.5.16부로 시행된 만큼, 해당일 이후 지급된 825만원에 대해서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법령 위반은 최대 200%) 부과

- ③ (상임심판 운영 중단) 연 180백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을 이사회 의결(폐지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없이 폐지(심판위원회, '24.2.16)하여 5명 해고, 정관 위반 및 심판의 공정성 확보/운영비 증가대책 등 대안 부재

⇒ 상임심판 재개 요구*

* 협회 측 주장대로 일부 상임심판이 수당 및 출장여비 중복 등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병행(개인 비위를 제도 폐지로 귀결하는 것은 부적절)

4 협회 운영실태

- ① (성공보수) 협회 정관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회장(8백만원), 전무이사(60백만원) 성공보수 지급 ⇒ 협회는 당사자에게 해당액 환수

- ② (상여금) 보수를 받을 수 없는 회장과 전무이사가 '24년 설날 명절상여금 (재원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로 기프트카드/현금화 가능 구매) 수령(회장 1백만원, 전무이사 50만원, 직원 30만원) ⇒ 협회는 당사자에게 해당액 환수

- ③ (임원 수당) ▲'21년~'24.7월까지 임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 ▲11명의 임원이 1천만원 이상 받아 전체 금액의 78%(전무이사 98백만원, 김○○ 부회장 77백만원, 회장 41백만원 등), ▲전무이사가 받은 사무실 방문결재 수당 (회당 15만원 총 약 30백만원) 등은 보수이며, 이 중 1,785만원은 원천징수 미 실시

⇒ ▲전무이사 소속팀에 관련 사실 통보(윤리강령 등 위반여부 파악 후 회신 요청), ▲과세관청 통보, ▲협회는 임원의 자체예산 사용(수당, 국내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문체부 보고

- ④ (공인구 지정)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셔틀콕을 공인구로 지정,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 위반

⇒ ▲해당 공인구 지정 해제, ▲관계자(사무처장, 담당 과장) 경고

- ⑤ (후원물품 관리) 관리대장 미비, 재고조사 미 실시 등 재고 관리 미흡

⇒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정산 시 투입 물량 확인 후 조치, ▲재고 및 입·출고관리 철저히 하도록 주의

- ⑥ (출장비) 국내출장 시 '일비 2만원'이나 '국내대회 지원 출장은 일비 10만원(부장급 이상 15만원)' ⇒ 시정요구(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 ⑦ (업무추진비) ▲충남 태안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매내역(총 326만원)은 내부 문서와 실제 결제 일시 불일치, 사용제한 업종 사용(주점 등, 547만원), 심야시간 결제(451만원) ⇒ 기관 경고 및 규정 준수 요구
- ⑧ (스포츠공정위원회) (1) 대한체육회 규정상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정관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의 제·개정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협회는 정관만 심의하는 것으로 기능 축소 ⇒ 시정 요구
 (2)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항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해제 등 불공정한 결정 ⇒ 협회는 불공정한 결정을 주도한 위원 해촉 조치
- ⑨ (인사위원회) (1) 인사위원회 구성 시 7명 이하 위원 중 3명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 이를 대의원(시도협회장, 신협연맹 회장)으로 구성 ⇒ 시정요구
 (2) 신규 채용 직원(5명) 인사위원회 의결 누락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및 경고

5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노무법인, 협회 직원 18명 중 17명 대면조사, 9.9~10.11)

- '24.4월 협회 워크숍(소안도)에서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운전 수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 신고 조치(문체부 → 고용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2))

- 1)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p.29)
- 2)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II. 조사내용

1 국가대표 지원

1 부상 진단 및 관리

- 협회에 부상 진단, 재활·치료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없으며,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 그때그때 협회와 지도자, 선수가 상의하여 결정
 - 의무위원회*(의료 자문, 대회 의사과견)가 있으나 '21년 이후 개최 실적 없음.
 - * 위원장 포함 총 10명(치과 3, 마취통증의학과 1, 정형외과 1, 한의사 1, 트레이너 4)
- 선수단 의견 청취 결과,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길 희망

• ▲“선수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원래 진료받던 병원에 가야 과거 진료 기록이 반영되어 정확한 진단 가능.” ▲“부상 선수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선수가 원하면 선수촌 외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허용해 줘야 함.”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는 게 회복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 ▲“부상은 본인에게 맞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게 맞지만, 부상 선수를 다 소속팀으로 보내면 악용할 수 있음. 필요한 상황에선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문체부 조차> ①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부상 치료에 대한 선수의 선택권 명시(외부에서 치료 시 정기적으로 코치진이 치료/회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포함)

② 배드민턴협회 요구 : 의무위원회 활성화 및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

2 진천선수촌 의료지원 확충

- 진천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의료진*이 근무 중**이나, 인원수 부족 및 특정 시간 몰림(9~10시, 13~15시, 19~21시)으로 충분한 치료·관리를 받기 어려움
 - * 의사 3(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간호사 3, 방사선사 1, 물리치료사 12(정원 14)
 - ** 근무시간 : 월~금 9시~18시 / 물리치료실 야간 포함 19~21시

- 또한, 협력병원 수(23곳)는 많으나,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활용도 저조
- * 해당 병원에서 먼저 협력병원 선정 신청을 하면, 진천선수촌 메디컬센터 의료진의 의견, 제공 혜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수가 찾아오기 전에는 선수촌에서 선수 몸 상태를 알 수 없는 문제도 존재

○ 선수단 의견 청취 결과, 선수촌 의료지원 확충 희망

• ▲“저는 팀이 잘 돼 있고 해서 괜찮은데, 시청 등 관공서팀 소속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선수촌 특성상 다들 운동하는 시간이 똑같고 관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충분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 ▲“협회 트레이너는 올림픽 출전 선수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서 2진인 저는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를 많이 갔음. 훈련 시간에는 방문할 수 없어서 훈련 전후로 가야 하는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많이 있어 진료 및 처치가 밀려있는 경우 많음.” ▲“선수촌 메디컬센터는 선수들이 몰리는 훈련 전·후 시간에는 거의 못 쓰고 늦은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음. 물리치료실을 늘리면 좋을 것 같음.” ▲“선수촌은 치료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으나 선수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문체부 조치> ① 선수촌 진료공간 및 물리치료사 확충*, 진료 시간** 연장 추진

* (안) ▲ 침대 15개→25개, ▲ 물리치료사 14명→24명

** (안) 물리치료실 평일 21시→22시까지 연장 운영

② 매년 국가대표 선발 직후 메디컬체크 진행

※ 메디컬체크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별 부상관리 계획 수립

③ 협력병원 선정 기준 마련 및 매뉴얼* 배포 요구 (→ 대한체육회)

* 주요 부상 부위, 부상 정도에 따른 권역별 병원 추천

3 선수촌 생활

□ 선수촌 훈련 시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 선수는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 주말 외출·외박(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제11조 ①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출·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선수들이 외출·외박을 할 경우, 지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불허가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지도자(감독)의 재량에 따라 외출·외박 허용 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 배드민턴은 현 감독 관리하에서 선수의 외출·외박 거의 불가능

○ 선수단은 과도한 외출·외박 제한에 대해 인권 존중 희망

• ▲“다른 종목과 달리 지도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외박을 허용해 주지 않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운동만 하는데, 스트레스를 밖에서 푸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걸 못 하게 하니 더 힘들.” ▲“올해 공식 외박은 1번뿐, 모두 성인인데 너무 통제가 강하다고 생각하며 외박을 허용해줬으면 좋겠음.” ▲“결혼도 했는데 주말에도 외박 같은 게 제한됨. 선수는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촌에 묶여있어야 함.”

<문체부 조차> ①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장명령 예정)

-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특별한 경우(국제대회 임박, 전염병 등)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② 배드민턴협회 및 다른 종목단체 요구 : 지침 개정 전 선수가 외출·외박 희망 시 최대한 선수의 의견 반영

□ 선후배 선수간 부조리 (청소, 빨래 등)

○ 선수단 의견 청취 결과, 안세영 선수 건의서 전달(24.3월) 이후 여자 선수단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남자선수단은 아직 일부 존재

• ▲“여자 선수의 경우 올해 초 청소, 빨래, 스트링, 외출 시 선배 전원 보고 등 선수촌 내 악습은 거의 사라짐. 급하게 외출해야 할 때 부탁을 하는 정도이며 강제로 시키지 않음.” ▲“남자선수의 경우 막내가 청소, 빨래, 스트링 때는 문화가 남아있음. 외출 시 선배에게 보고하는 문화도 남아있고 사람마다 다름.” ▲“남자 선수의 경우 일부 남아있긴 하나 거의 각자 하는 분위기임. 2~3년 전쯤부터 거의 없어지고 있음.”

○ <대한체육회>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하여 빨래, 청소 등 사적 용무 지시 금지를 명문화(24.9.23)하고, 향후 선수촌 입촌 시 선수 대상 관련 교육 강화 예정

제16조의2 ① 선수촌에 입촌한 강화훈련 참가자는...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호 : 빨래, 청소, 개인적 심부름 등 강화훈련 참가자 간 용인 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는 '사적 용무 지시'를 금지하여야 한다.

<문체부 조치> 국가대표 선수단 대상 정기 모니터링(반기별) 추진

□ 새벽훈련 및 산악훈련

- 훈련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새벽 훈련(주 4회, 06:00~07:30)과 산악 훈련(월 2회, 금요일 15:00 이후)이 '23.4.5부터 의무화
- 선수단은 훈련 효과, 부상 우려 등 문제 제기하며 자율성 존중 희망

- “새벽 운동은 이 시간에 부상이 많이 오는데 중국은 아예 새벽 운동을 안 한다고 함. 선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선수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음.”
- “새벽 러닝은 무릎 부상 등 개인 문제가 있는 선수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음.”
- “새벽 훈련은 15분 체조 후 400M 시간 재서 러닝하고 이후 복근 매달리기 하는 등 훈련 강도가 높고 본래 훈련에 지장이 있음. 새벽 훈련 쉬는 날에는 오전·오후 훈련 집중도가 좋아짐.”
- “새벽에 러닝 뛰는데 발목도 무릎도 안 좋는데, 아프다고 하면 눈치 보임.”
- “새벽 운동은 올림픽 참가선수들은 몸 관리 차원에서 쉬라고 하고, 비출전 선수들에게는 극기훈련 정도로 꼬리잡기 인터벌도 하고 언덕도 뛰는 등 굉장히 강도가 심해서 훈련 중 부상위험 높음.”
- “산악 훈련은 시간 내 들어와야 해서 미끄러지는 등 부상 위험이 높음.”

<문체부 조차>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각 종목 선수단이 새벽훈련, 산악훈련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4 단식과 복식 맞춤훈련 지원

-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구성 현황(감독·코치 8명, 선수 38명 등)

	총괄지원	'남' 단식	'여' 단식	'남' 복식	'여' 복식	혼합복식*
선수		8명	8명	11명	11명	-
코치진	총감독 1명, 트레이너 4명, 영상팀 1명	코치 1명	코치 2명	코치 1명	코치 2명	코치 1명

* 남녀 복식 선수가 팀 구성

○ 선수단은 코치진 증원, 훈련의 과학화 및 단·복식 맞춤 훈련 희망

-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1진 선수에 코칭이 집중되어 젊은 선수가 소외되는 현상 많음. 다른 나라는 1진·2진 코치가 각각 있음. 코치는 한 사람이 선수 모두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증원됐으면 좋겠음.” ▲“코치가 파트별 한 분만 있으니 잘하는 선수 위주로 지도를 하고, 막내들은 자기들끼리 운동하는 상황임.”
- ▲“다른 국가는 워밍업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단식·복식은 다른 종목인데 웨이트트레이닝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고, 훈련방식도 몇 년 전과 동일.”
- “영상 분석 인력이 있으나 영상 편집가에 가깝다고 생각.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기만 함. 영상을 분석해서 경기 전략을 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함. 국가대표팀에 계신 분은 스포츠과학원처럼 전문적이지 못함.”

○ <스포츠과학원> 한국과 주변 경쟁국 감독 및 코치 수 조사

국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감독	1명	1명	-	1명
코치	7명	9명	17명	10명

<문체부 조치> ① 국가대표 지도자 증원 추진 (지도자 : 8명 → 13명)

	총괄	'남' 단식	'여' 단식	'남' 단식	'여' 복식	혼합복식
'24년	총감독 1 트레이너 4 영상팀 1	코치 1명	코치 2명	코치 1명	코치 2명	코치 1명
'25년	총감독 1 단식감독 1 복식감독 1 트레이너 6 영상팀 1	코치 2명	코치 2명	코치 2명	코치 2명	코치 2명

※ 코치진 증원은 복식 국가대표선수 선발방식 변화(주관성 최소화) 연계(복식 선수 증원), 트레이너 및 영상팀은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와 연계

② 영상팀 처우개선, 우수인력 확보 지원('24년 월 280만원→ '25년 월 330만원)

③ 배드민턴 종목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 훈련 및 국제대회 시 영양, 심리, 영상분석 등 지원 확대
- 단식·복식 특성에 맞는 개별 훈련 프로그램 연구 및 보급

※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밀착지원 예산('24년 31.2억원 → '25년 47억원) 활용

5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참여 허용

○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 참여 허용에 대한 제도는 없으나 사실상 불허. 또한, 배드민턴은 트레이너의 자격요건 불명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 선수관리 담당자(트레이너)는 체육지도자, 물리치료사, 의사·간호사 또는 대한체육회·경기단체가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트레이너 자격) :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없음).

○ 선수단은 개인 트레이너 허용, 트레이너 증원 및 처우개선 희망

- ▲“개인트레이너는 본인 돈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면 막을 이유는 없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선수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임.”
- ▲“협회에 개인 트레이너 규정이 만들어지고, 규정 내에서 운영된다면 괜찮을 것임.”
- ▲“아픈 사람에 비해 트레이너가 부족하며, 지금보다 1~2명은 더 필요.”,
- ▲“트레이너는 많이 부족함. 국제대회가 있으면 트레이너들이 많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잔류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매우 부족.”
- “처우 문제로 트레이너들이 오래 근무하기 어려움. 점점 경험이 적은 트레이너가 들어오게 됨. 선수들에게도 악영향이 있으므로 개선되면 좋겠음.”

○ <대한축구협회>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개인트레이너 관련 규정 개정

- (자격)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보유자만 개인트레이너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 (참여형태) 파트타임 형태로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만 협회에 고용
- (의무팀과의 관계) 개인트레이너도 대표팀 의무팀의 지시에 따르고, 선수 상태 및 치료 활동 내역을 의무팀에 보고해야 함

<문체부 조차> ①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장명령 예정)

- 의무트레이너 자격요건 명확화 및 개인트레이너 허용 명시 등
- * (자격요건 예시)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 등

② 의무트레이너 증원* 및 처우개선('24년 월 305만원 → '25년 월 330만원) 추진

* ('24년) 4명(국고 지원 3명, 협회 자부담 1명) → ('25년) 6명

③ 한국스포츠과학원·선수촌 메디컬센터를 통한 주기적 교육 시행

6 국가대표 소집기간

- 국제대회 종료 후 바로 선수촌에 입촌하는 경우가 많아 시차 적응 등 몸 관리가 어렵고, 스트레스 해소도 곤란
- 선수단은 국제대회 종료 후 휴식을 보장받기를 희망

• ▲“국제대회 끝나고 선수촌 소집 관련 1군은 다들 힘들어함. 아픈 사람도 많음. 다음 대회가 바로 있는 게 아닌 이상 며칠은 쉴 필요” ▲“다른 종목은 소속팀에서 훈련을 충분히 진행하는 데 반해, 배드민턴은 국제대회를 다녀오자마자 다시 소집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국제대회가 끝난 후 바로 국가대표에 소집되다 보니 소속팀에 작년에는 1번도 못 가고, 올해는 1주일밖에 훈련을 못함. 다른 선수도 365일 중 300일을 국가대표팀에 있었음.” ▲탁구, 레슬링 등은 대회가 없으면 소속팀에 있는데, 배드민턴은 해외 대회가 많은 상황에서 대회 갔다 오자마자 소집하는 것은 문제. ▲연봉을 소속팀에서 받으나 소속팀 선수로 대회출전 기회 거의 없음.

<문체부 조치>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 기간 휴식 부여하고 훈련을 소집하도록 개선

7 국제대회 출전 기회 불균형

- 1진 선수는 너무 많은 대회에 출전(23년 안세영 선수 18개 대회 출전)하여 혹사 논란이 있고, 2진 선수는 국제대회에 거의 나가지 못해 경험 부족
- 선수단은 2진 선수 국제대회 출전 기회 확대 등 출전 기회의 전략적 배분 희망

• ▲“올해 한 번도 국제대회에 출전 못함. 국가대표 2진 선수는 후보선수보다 해외에 못 나가는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 성적에 따라서 기회를 차등하는 등 시스템 필요.” ▲“1진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이 너무 많아 일정상 힘들 수 있으나 2진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가고 싶음. 올해는 국제대회에 딱 1번 출전.” ▲“국제대회 출전 기회 배분은 선수들의 혹사 여부와 랭킹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중국, 대만의 선수 등은 이미 전략적으로 대회에 출전하고 있음”, ▲“현재는 1진 선수들이 너무 대회 출전이 많아 부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혹사로 인해 선수생명이 짧아짐”

<문체부 조치>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이 1진과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시 예산 지원 확대

8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강화

-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선수 선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음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협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어 소통 부족
 - 또한, 협회 「선수위원회」 규정상 선수위원회에서 선수 권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으나, **선수위원회 유명무실**
 - ※ 현재 선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가대표 선수가 포함되지 않아도 됨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호 :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10호 : 선수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선수단 의견 청취 결과, 중요 결정 시 협회가 선수단의 의견을 들어주기를 희망

- ▲“선수나 지도자 의견을 협회로 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감독이 대변할 수밖에 없음.” ▲“규정 등 개정할 때 선수들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고, ‘이렇게 된대’하다가 됨.” ▲“경향위에서 현직 감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든지 해야 한다고 봄.” ▲“규정 개정 시 선수 의견을 듣지 않음. 개인 후원 자리 관련 문제도 후원계약 체결된 날 사진 찍으면서 알았음.” ▲“협회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시 징계 내용은 기사로 새로 보게 되었음.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어느 순간 없어졌음.” ▲“후원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건 ‘어느 순간 없어졌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음.”

<문체부 조차> ①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지침」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된 주요 결정 시 지도자의 의견을 필수로 청취하도록 명시

② 배드민턴협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선수위원회 반기별 개최 의무를 규정하도록 개선
- 선수위원회 위원에 국가대표 선수를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개선

2

제도개선

1 국제대회 출전 제한

① 국가대표 선수

- ① (현황)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실업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 참가하려 해도 규제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

제10조(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⑦ 해외리그 및 해외 초청경기, 세계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 등의 참가는 본 협회 등록팀의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참가여부를 심의한다.

가. 국가대표

- 1)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개최 해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 일정을 고려하고 국가대표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아래 가-3)항의 기준에 의거 참가를 승인할 수 있다.
- 3) 세계랭킹 단식-16위 이내 선수, 복식 8위 이내 선수

- 배드민턴 외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³⁾은 모두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참가 국가별 참가인원 제한이 없는 대회) 자비 참가와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 참가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② (협회 입장) 해외리그 및 해외 초청경기 참가 제한은 존재하나 세계 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자비 참가 제한은 없음*.

* ('20~'24년)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참가 허용 5회(팀 단위 3회, 개인 2회)

<문체부 조치> 해외리그/해외초청경기 참가제한 폐지 및 규정 현실화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자비참가 제한) 시정요구 (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3) '국가별 참가인원 제한이 없는' 국제대회 파견선수 선발방식

구분	종목(총 44)
참가 신청 시 출전 가능(32)	• 가라테, 골프, 댄스스포츠, 레슬링, 롤러스포츠,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봅슬레이스켈레톤, 사격, 소프트테니스, 수영, 스쿼시, 스키, 승마,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자전거, 조정, 주짓수, 철인3종,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펜싱, 핸드볼
해당 국제대회 없음(12)	• 근대5종, 농구, 럭비, 복싱, 산악, 세팍타크로, 양궁, 야구소프트볼, 아이스하키, 빙상, 하키, 컬링

2 비국가대표 선수

중간브리핑(9.10)

-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男 28세, 女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 출전 가능
-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 제기.
 -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⁴⁾
-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음.
 -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음.
-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 희망
 -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 우려.
 - 한편, 축구,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존재

4)

2016.1.7.~2019.5.28.	2019.5.29.~현재
제6장 국가대표선수 제18조(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나. 비 국가대표 3) 소속팀에서 소속팀 선수의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참가 승인 요청할 경우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공로에 대한 기준은 아래 나-4항의 기준에 의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9세,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 4) i) 올림픽경기대회 메달 획득선수 ii)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획득선수 iii)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선수	제6장 국가대표선수 제18조(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나. 비 국가대표 3) 소속팀에서 소속팀 선수의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참가 승인 요청할 경우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공로에 대한 기준은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횡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 4) - 삭제 -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문체부>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제한 규정 폐지 권고(9.12)
→ <배드민턴협회> 규정완화 또는 폐지 등의 개선안 마련 회신(9.27)

• 회신의견 : 배드민턴 종목은 연간 상시 국가대표 강화훈련을 시행하는 바 (2024년 기준 강화훈련 승인일수 220일) 무분별한 국제대회 참가 허용은 선수들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참여 의욕 저하 및 우수선수의 국가대표팀 이탈로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 및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관련 규정 폐지'에 따른 장.단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규정완화(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우수선수 거양 선수 허용기준 완화 등) 또는 폐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규정 개정 예정.

- <선수단 추가 의견(중간브리핑 후 9.13~9.20, 14명)> 폐지 희망

-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고등학생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게 쉬운 일이 아님.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어야 경험이 쌓이고 경기력 강화됨. 국제대회를 경험해 본 선수(언니)들과 그렇지 못한 본인은 다름”
- “저도 욕심이 있는 선수인데, 다른 나라를 보면 어린 나이부터 팀에서 지원해주고 랭킹도 저보다 낮았는데 국제대회 출전을 통해 랭킹이 많이 올린 선수도 많음. 경험이 많아야 실력이 느는데, 그걸 막고 아예 못나가게 하니깐 제 자리인 것 같음. 챌린지 시리즈 등을 나가도 세계랭킹이 올라가는데, 못 나가니깐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음. 올해 베트남 챌린지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아는 언니와 얘기했는데, 자기 나라는 자유롭게 나가라고 지원해 준다고 함.”
- “국가대표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랭킹을 유지하고 있어야 국제대회에서 손해를 안 보는데, 출전을 못하면 1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아놓은 랭킹 포인트가 사라짐. 규제를 없앤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국가대표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음”.
- “실업팀 선수도 출전 허용으로 세계랭킹을 높일 수 있는 기회 필요”.

<문체부 조치> 시정명령

-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국제대회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강화하는 것조차 금지하며,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랭킹 관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2 후원계약

1 후원용품의 사용범위

중간브리핑(9.10)

-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국가대표 운영지침」 제9조(초상권 및 홍보활동)

- ③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본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본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기간 : '23.4.1~'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23.2.8)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되었음.

- 홍○○ 부회장 : 국가대표선수들 신발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신발이 본인에게 가장 편하게 가야하는데 신발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 신발만이라도 다른 제품으로 안될까요?
- 김○○ 회장 : 안됩니다. 그건 협회의 후원계약 위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전체 : 없습니다.

-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⁵⁾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함.

-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의 소유임을 명시

<덴마크> [BADMINTON DENMARK Kommercielle regler] (Vejledning I forbindelse med indgåelse af sponsorkontrakter) Spilleren ejer altid retten til ketcher og sko, også I forbindelse med deltagelse på klubhold og/eller landshold. [배드민턴 덴마크 상업 규정] (스폰서십 계약 체결을 위한 지침) 클럽 팀 및/또는 국가대표팀 참가와 관련하여 라켓과 신발에 대한 권리는 항상 선수가 소유합니다.

-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 희망함(전문가도 동일)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선수단 추가 의견(중간브리핑 후 9.13~9.20, 14명)> 선수의 선택권 존중 희망

• ▲“선수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옆에서 세영 언니도 봐왔지만 신발 때문에 엄청 고생해왔음.” ▲“라켓이나 신발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 <문체부 장관 인터뷰6(9.20.)>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선택권 존중 필요, 후원금 감소하는 경우, 선수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 <대한배드민턴협회(10.14.)> 후원사와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를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 허용

<문체부 조치> 시정명령 및 필요 시 조정

-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의 선수 선택권 보장은 협회가 특정 선수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보편적인 권리보장’으로 접근 필요
- 협회가 미온적 태도를 지속하는 경우, 문체부가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를 조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5) 종목별 후원계약서 내 ‘후원사 용품 사용 의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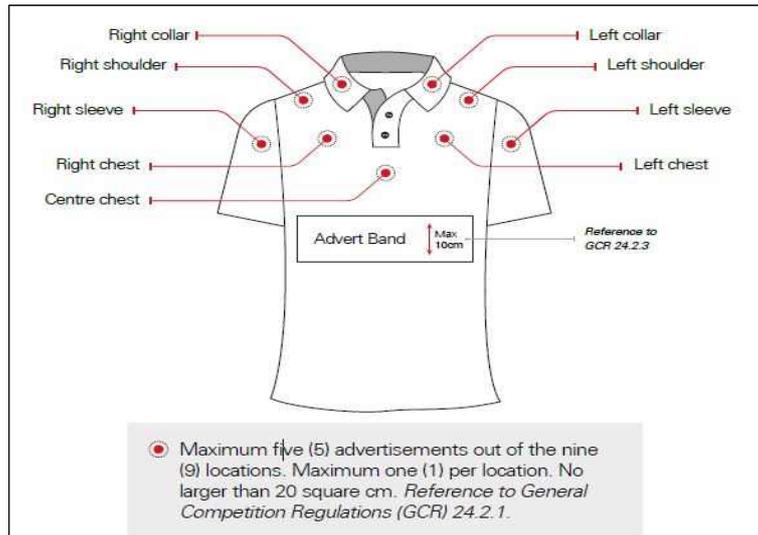
구분		종목(총 45)
후원계약 체결 (42)	후원사 용품 사용 의무 없음(6)	• 댄스스포츠, 럭비, 루지, 승마, 조정, 체조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 사용 의무 없음(29) * 유니폼 등	• 가라테, 골프, 근대5종, 농구, 롤러스포츠, 배구, 빙상, 사격,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영, 스쿼시, 스키,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유도, 자전거, 주짓수, 철인3종,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하키, 핸드볼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 사용 의무 있으나 예외 인정(5)* * 선수의 선택권 존중	• 레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야구소프트볼, 육상, 펜싱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 사용의무(예외 없음)	• 배드민턴, 복싱
후원계약 미체결(3)		• 바이애슬론, 요트, 우슈

6) “많은 협회 중에서 배드민턴협회가 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복싱 하나 정도가 그와 비슷한 케이스고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선수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굳이 여기만 그렇게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게 그럼 후원사의 후원금이 줄어들 거다. ... 그런 지원은 저희가 다 개선할 거고요.”(CBS 김현정의 뉴스쇼, 9.20.)

2 유니폼 로고 노출

중간브리핑(9.10)

-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태극기 제외)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하여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불가능

「국가대표 운영지침」 제9조(초상권 및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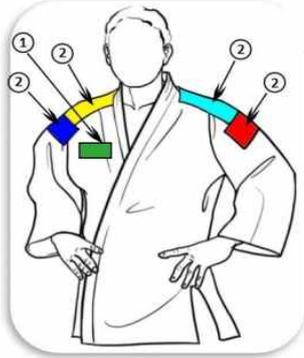
⑥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정한 홍보 규정 내에서 개인 후원계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규정 내 위치 중 우측 카라(넥)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후원 계약은 제한되며, 술, 담배, 도박 등 국가대표 선수로서 적절하지 않은 후원사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중간발표(9.10) 후 추가조사

- <선수단 의견(중간브리핑 후 9.13~9.20, 14명)> 개인 후원 보장 희망

- ▲ “협회에서 협찬 받아주는 건 감사하긴 한데, 선수들도 개인 스폰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 5개를 협회에서 묶어두고 있으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수익이 막히는 건데 풀어줬으면 좋겠음.” ▲ “협회에서 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물어본 적은 없었음. 선수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황) 다른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은 대부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 시 협회 후원사 로고를 우선 노출함
 - 다만,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개별 계약을 허용하여 배드민턴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한편, 가라테, 유도는 세계종목단체 규정에서 선수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두어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가라테 : 노란색 구역	유도 : 초록색 구역
 <p>ADVERTISING SPACE FOR THE WKF OF 20 x 10 cm AD</p> <p>ADVERTISING SPACE FOR THE N.F. OF 15 x 10 cm</p> <p>ADVERTISING SPACE FOR THE ATHLETE OF 5 X 10 CM</p> <p>BACK NUMBER OF 30 X 30 CM DISPLAY THREE LETTER COUNTRY CODE</p> <p>EMBLEM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12 x 8 cm</p> <p>SPACES FOR THE MANUFACTURERS TRADEMARK OF 5 x 4 cm</p>	<p>On the judogi jacket (right-hand side lapel only) there is an advertisement space reserved for the athlete(see picture 6 no 1). 선수 개인 후원 광고는 유도복의 상의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본 광고는 도복 상의의 오른쪽 가슴에 위치한다.</p> 

- (협회 입장) '25.3월 협회 후원사 계약 종료 후에는 규정대로 선수에게 최소 1개의 후원계약을 보장할 예정

<문체부 조치> 시정 요구(불이행 시 시정명령 예정)

- 선수의 수요가 있는 경우, '25.3월 이전이라도 '예외 인정'

7) 국가대표 자격 국제대회 출전 시 종목별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허용 현황

구분	종목(총 44)
허용(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라테, 수영*, 스키**, 유도, 철인3종*** * 수영복, 수경, 수모 개인 후원 계약 허용 ** 헬멧에 협회 후원사와 겹치지 않는 카테고리에서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 허용 *** 세계연맹에 승인받은 유니폼 착용 의무가 없는 대회에서는 허용
미허용(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롤러스포츠,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승마, 역도, 자전거, 탁구,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복싱,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아이스하키, 야구, 우슈, 하키, 체조, 펜싱, 배구, 스쿼시, 주짓수, 카누, 핸드볼, 농구, 사격, 빙상, 댄스스포츠, 육상, 럭비, 양궁, 요트, 조정, 태권도, 카누, 컬링, 테니스, 축구, 펜싱

③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

중간브리핑(9.10)

-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 8)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불)의 20% (연 72.2만불)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배분(경기력 성과비)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협회는 '21.6월 해당 조항 삭제

※ 후원계약 총액(현금 기준) : A사 연 \$ 3,610,000('17.3월~'18년) / B사 연 \$ 1,800,000('19.1월~22.12월), B사 연 \$ 2,750,000('23.4월~27.3월)

-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함.

■ 중간발표(9.10) 후 추가 조사

- <확인 사항> 협회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기 전인 '20년도에도 후원사의 배분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 <협회 관계자 조사(9.12, 9.26.)>

- ▲ “19년도에 후원금이 50% 정도 낮은 금액으로 후원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출 규모는 전에 비해 줄이기 어렵다 보니 마이너스 결산이 되었음. 이에 총회나 이사회 때 질타 목소리가 컸고,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의견이 많아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없었음.” ▲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나 사업 자체가 거의 없었고, 성과를 평가할만한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음. 20년도 배분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나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이 없었음.”

<문체부 조치> 시정 요구

- 규정에 위반되게 지급하지 않은 '20년 배분금 당시 선수단에게 지급

- 8) 제11조 본 협회 후원사 국가대표 후원금의 일부를 아래 기준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를 지급한다.
- ① 재 원 :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후원금(현금)
 - ② 지급률 : 후원금의 20%
 - ③ 배분률 : 국가대표 지도자 10%, 국가대표 선수 90%
 - ④ 배분방법 : 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배분되는 경기력 성과비 총액의 50%는 1년간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가 획득한 총상금 대비 개별적으로 한 선수가 획득한 상금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다.
나. 국가대표 선수에게 배분되는 경기력 성과비 총액의 50%는 평가위원회의 선수 개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평가위원회에는 선수별 등급 및 등급에 따른 배분율을 정하며, 등급 및 등급에 따른 배분율은 국가대표팀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선수 개인별 인지도, 월드랭킹, 국가대표팀 훈련 참여도 등 선수의 종합적인 면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⑤ 지급시기 : 연간 1차례에 지급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4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 시 후원사 보너스 지급

중간브리핑(9.10)

-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시 받게 되는 보너스(상금)⁹⁾ 지원 체계(후원계약서 비교)

구분	후원사		
	A사	B사	B사
기간	2017.3월 ~ 2021.2월 *18년 A사에서 후원계약 파기	2019.1월 ~ 2022.12월	2023.4월~2027.3월
지급방식	후원사에서 선수단에게 직접 지급(선수 60% 지도자 40%)	후원사가 협회를 통해 선수에게 지급	후원사가 협회에게 지급(선수에게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 삭제)
최대금액	없음	연 \$ 100,000	연 \$ 150,000

- ※ <최대금액> (A사) 계약서에 규정된 대회별 상금대로 선수에게 지급, (B사) 연 최대 금액이 있는 만큼, 계약서에 규정된 상금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을 받았으나, 변경 후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

■ 중간발표(9.10) 후 추가조사

- (지급방식 변경) '19년 변경에 대해 협회와 후원사는 서로 당시 계약서를 상대방이 가져왔다는 입장, '23년은 최대금액 제한으로 계약서에 규정된 상금대로 선수에게 지급할 수 없어 협회가 현실 운영에 맞게 삭제

9) 후원사별 대회별 보너스(상금)규모 비교 (단위 : US \$)

구분	A사		B사 ('1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1위	2위	1위	2위
올림픽	20,000	10,000	30,000	20,000
아시안게임(단체전)	20,000	10,000	20,000	10,000
아시안게임(개인전)	10,000	5,000	* 단체, 개인 구분없음	* 단체, 개인 구분없음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	30,000	15,000	20,000	20,000
세계선수권대회(개인전)	10,000	5,000	* 단체, 개인 구분없음	* 단체, 개인 구분없음
BWF 월드컵 파이널	6,000	3,000	13,000	6,500
BWF 월드컵 슈퍼 1000			13,000	6,500
BWF 월드컵 슈퍼 750	5,000	2,500	13,000	6,500
BWF 월드컵 슈퍼 500			10,000	5,000
BWF 월드컵 슈퍼 300	*대회 구분없이 '슈퍼 시리즈'로 명시	*대회 구분없이 '슈퍼 시리즈'로 명시	6,500	3,250
BWF 월드컵 슈퍼 100			4,000	2,000
인터넷셔널 챌린지	-	-	2,500	-
인터넷셔널 시리즈	-	-	2,000	-
퓨처 시리즈	-	-	2,000	-
BWF 주니어 토너먼트	-	-	1,500	-

- (보너스 지급액) '19~'22년은 협회가 수령한 보너스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요대회 선수단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23년은 대회 보너스 입금액보다 선수단 포상금 지급 총액이 약 6,400만원 적음

(단위: 원)

연도	대회 보너스 입금액	선수단 포상금 지급액
2019	115,100,000 (10만 달러)	464,914,980 (후원금 20% 배분액 36만 달러 포함)
2020	14,578,200 (1만 3천 달러)	-
2021	119,348,000 (10만 달러)	117,700,000
2022	122,230,000 (10만 달러)	129,000,000
2023	198,750,000 (15만 달러)	134,700,000

○ <협회 관계자 조사(9.12.)>

- “이전 후원사의 후원금과 금액 차이가 커서 보너스 금액은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협회가 수령한 후 선수 포상금 및 훈련 비용지원 등에 나누어 사용한다고 생각했음. … 후원사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 훈련 및 포상금을 다른 종목보다 많이 준다고 생각했지 선수들에게 안 주고 떼먹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음.”

<문체부 조치> 시정 요구

- 후원사 계약조건이 선수단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 및 선수단 사전 의견 청취 의무화
- 후원사 입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23년 포상금 지급

5 후원사 선정 수의계약

- 협회는 마케팅 규정(18.11.19. 시행)에 따라 '국가대표팀 메인 후원사' 선정 시 입찰 공고하여 진행해야 하나, '23년 현재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후원계약 체결
 - 협회는 동 조항이 후원사 유치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나, 동 조항은 국가대표팀 메인후원사는 입찰 공고함을 전제로 성공보수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대한배드민턴협회 「마케팅 규정10」 제18조(후원사 유치에 따른 보상)

1. 협회의 각종 사업 및 국가대표팀 후원을 위한 후원사를 유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에게 유치 후원금의 1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그 세부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 본 협회 임원 및 관계자

② 적용사항

가. 국내.국제대회 개최 : ① 대회 메인 후원사 ② 대회 주요 후원사 ③ 대회 기타 협찬사

나. 대표팀 : ① 유니폼 주요 후원사 : 가. 유니폼 앞면 높이 10cm 광고

나. 협회 광고 - 유니폼 하의 50 cm² 광고

② 유니폼 기타 후원사 : 유니폼 상의 20 cm² 광고(최대 5개)

③ 메인 후원사 외 용품 후원사

다. 기타사업 : ① 메인 후원사 ② 주요 후원사 ③ 기타 협찬사

라. 대한배드민턴협회 : ① 주요 후원사 ② 기타 협찬사

③ 비적용사항

가. 국내.국제대회 개최 : ① 대회 개최지 후원

나. 대표팀 : ① 유니폼 및 의류 제조사, 경기용품 메인 후원사 : 입찰 공고하여 진행

- 현재 후원사의 경쟁사가 제기했던 '후원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23.8.18.)되었으나,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원칙인 변론주의(11)에 따라 경쟁사가 주장한 사실(대한체육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됨.

• 채권자(현재 후원사의 경쟁사) 주장의 요지 : 협회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재 후원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제8조 제1항 및 계약규정 제5조, 제7조를 위반하였다. ...

• 판단 : ...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원종목단체인 채무자 협회가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문체부 조치> 시정 요구

- 협회 마케팅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대표팀 메인 후원사 선정

10) 협회 마케팅 규정은 협회의 다른 규정과 달리 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대외 공개되어 있지 않음.

11)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1646 판결] ...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3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복식)

중간브리핑(9.10)

-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30%로 선발
 -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2024년 2월 30%로 확대됨.
-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
 - '루지'는 경기력 90점과 면접 10점(적극성 2, 성취욕구 2, 국가관 2, 운동환경 2, 기타 2)로 구성되는데, 면접 점수는 6점 이상이면 만점 인정

* <방식 1. 선수 2명이 팀을 구성하여 선발전을 참가하는 종목>

- ① 댄스스포츠(라틴, 스탠다드), ② 소프트테니스, ③ 수영(아티스틱 스위밍), ④ 요트, ⑤ 컬링(믹스 더블), ⑥ 피겨스케이팅(댄스, 페어)

* <방식 2. 개인 경기력(단식)에 따라 선수 선발 후 팀구성>

- ① 봅슬레이, ② 카누(C-2, K-2) ③ 탁구, ④ 테니스

* <선발전 요강에 따라 방식 1과 2 혼용> 조정(더블)

-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는 경기력으로 선발. 다만, 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는 한국과 달리,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세계랭킹과 주요대회 순위대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
-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배드민턴은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며,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이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은 공감대 존재
 -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는 의견
 -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슈퍼 1,000 대회)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 * <현행 면제 범위> 올림픽이 없는 해(단식 16위, 복식 8위), 올림픽 개최 연도(단식 24위, 복식 12위, '24.2월 개정) → <변경> 단식 32위, 복식 32위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선수단 의견(중간브리핑 후 9.13~9.20, 14명)>

- “전문가 평가점수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30%는 너무 높다고 생각함, 자기 소속팀 선수에게 높은 점수 배정 등 주관적인 평가로 순위가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가 평가보다는 부상이나 운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뛰어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우선선발을 30위 권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
- “우선선발을 늘리면 기존 국제 대회를 많이 나가는 선수만 유리할 수 있으며 선발전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고등학교 선수 등 젊은 선수 대상 일부 TO를 배정해서 뽑아 미래를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음.”

○ <前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간담회(10.14.)>

- “우선선발 확대가 필요하며, 복식은 특히 국제대회 32위까지 오르기 어려워 단·복식 모두 32위까지 확대할 필요.”
- “젊은 선수 선발 및 국가대표 1군·2군 별도 운영을 통한 육성 필요.”

<문체부 조치> ① 복식 국가대표 선발방식 개선 요구

- (문체부 검토) ▲ 경기력이 아닌 주관적 평가 배제 필요
 - ▲ 선발전의 문제점(운이 크게 작용) 최소화를 위해 최상위 국제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까지 우선 선발범위 확대(32위) 필요
 - ▲ 장기적 관점에서 유망한 신인선수 육성을 위해 선발 주니어 국가대표(만 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필요
- (협회 요구) 문체부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대표 선발방식 개선방안 수립 및 제출

② 개선 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수 확대(총 38명 → 48명) 검토

4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중간브리핑(9.10)

-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및 계약금 상한 차별**(고졸 : 5천만원, 대졸 : 6천만원), ▲**연봉인상률 제한**,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 7년/대졸 :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 등 존재

< 선수계약 관리규정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2021.3.3.) >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	연봉상한액	연봉인상률	기타
대졸 선수	5년* (병무기간 제외)	5년간 최대 1억 5천만원	첫해 최대 6천만원	연간 인상률 7% 미만 (3년 경과 전까지)	① 계약금 및 연봉 상한액은 <u>국가대표 수당 및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광고수익 등) 포함</u> ② <u>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은 최대 1억5천만원</u> .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전 입상자의 경우 계약금 2억원 가능
고졸 선수	7년** (병무기간 제외)	7년간 최대 1억원	첫해 최대 5천만원		

* 계약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 가능 / **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7년 이내 가능

- 실업배드민턴연맹은 동 규정이 직장운동부*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 개정 검토 입장
 - 제정된 2016년 이래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팔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 감안
 - * '24년 현재 팀수 총 23개(지자체 15, 공공기관/민간기업 7, 국군체육부대 1)
-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배드민턴 포함)¹²⁾ 중 **20개 종목**은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음.
 - **핸드볼**은 계약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연봉액은 **하한액** (남자 2,700만원, 여자 2,400만원)만을 정하고 있음.
- **국가대표선수단/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12) 검도, 근대5종,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소프트테니스, 스쿼시,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육상, 자전거, 체조, 탁구, 테니스, 펜싱, 하키, 핸드볼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문체부-실업연맹/실업팀 관계자 회의(9.25.)> 아래와 같은 공감대 형성

학력에 따른 구분	·실력이 아닌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
계약기간	·계약기간 규정은 선수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나, 7년 은 선수·소속팀 모두에게 지나치게 김
연봉 및 계약금	·최초 계약 시 첫해 연봉 및 계약금 상한은 실업팀 예산책정의 기준점이 되며, 하한액만 정할 경우 해당 금액이 기준점이 되어 오히려 선수의 처우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연봉인상률	·연도별 연봉인상률 제한은 불합리함 .
우수선수에 대한 예외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일정 세계랭킹 이상의 선수 등에 대해서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팀 내규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우수선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기존 계약된 선수들의 계약	·계약기간 단축 시, 이미 5년 또는 7년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에게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 후 계약을 해지할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지 선택권 부여 필요
기타	·'계약금 및 연봉상한액에 수당(훈련수당, 국가대표수당, 입상포상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익(광고수익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개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팀 모기업 내 광고 활동 수익이 포함된다는 의미임을 명확히 할 필요

○ <배드민턴실업연맹>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 추진

<문체부 조치> 개정 진행 상황 관련 실업연맹 지속 협의 및 점검

5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와 결격사유

중간브리핑(9.10)

- 배드민턴은 선수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선수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 예시) 정당 지시 불응 : 1회 위반(자격정지 6개월 미만), 2회 위반(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이상(자격정지 1년 이상)

- 故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으로 문체부는 즉각 폐지 권고

※ 현 국가대표의 임무 : ①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②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③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해 지시한 사항의 이행, ④ WADA가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 금지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문체부> 해당 규정 삭제 권고(9.12)

→ <배드민턴협회> 차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 안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규정 개정 예정' 회신(9.27)

나. 권고 내용 : 「국가대표 운영지침」 제6조(임무)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4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와 같이 개정

▷ 회신 의견 : 차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 안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규정 개정 예정

다. 권고 내용 : 「국가대표 운영지침」 내 결격사유 중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삭제

▷ 회신 의견 : 차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 안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규정 개정 예정

<문체부 조치> 규정 개정 이행상황 점검

3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1 승강제 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1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 (이른바페이백)

중간브리핑(9.10)

-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체육회가 공모하여 협회를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대상으로 선정

<연도별 지원액, 용품구입액, 추가후원물품 금액 >

구분	승강제리그		유청소년클럽리그		셔틀콕 제외 구매금액	후원물품 (이른바페이백)	
	총 예산	용품구입액	총 예산	용품구입액		계약금액	실지금액
'22년	25억원	4억원	17억원	4.6억원	3.8억원	-	-
'23년	25억원	3.8억원	17억원	5억원	4.3억원	1.3억원*	1.5억원
'24년	25억원	4.7억원	15억원	3.9억원	3.5억원	1.4억원**	0.5억원

* '23년 : 총 8.8억원 용품(승강제 3.8억원, 유청소년 5억원)을 구입하되, 셔틀콕 제외 구매금액 (4.3억원)의 30%를 후원물품으로 받는 것으로 구두계약(1.3억원 상당) / 실제 1.5억 수령

** '24년 : 총 8.6억원 용품(승강제 4.7억원, 유청소년 3.9억원)을 구입하되, 셔틀콕 제외 구매금액 (3.5억원)의 40%를 후원물품으로 받는 것으로 서면계약(1.4억원 금액 내 협회 요청시 후원사가 배분)

-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태안군배드민턴협회장, 회장 임명)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 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하여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

- 실제 수령한 물품(셔틀콕, 라켓 등)은 1.5억원이고, 공모사업추진 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민턴협회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됨.

<2023년 지역별 후원물품 배분 규모>

(단위: 개, 천원)

구분	서울	대전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태안)	협회	기타	합계
수량	200	150	200	300	300	3	650	900	494	2,182	867	107	6,353
금액	3,580	2,685	3,580	5,370	5,370	27	11,635	16,110	8,847	52,832 (40,302)	34,544	7,211	151,791

- (2024년)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여 후원사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음.
- 현재 2024년 실지금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임.
 - 또한,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8.28)*를 하였으며,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음.
 - * 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지원 및 제공받은 용품 일체(셔틀콕 포함), ② 지원 사업명, ③ 사용처(증빙포함, 증빙 미제출 시 사용처로 불인정)
-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¹³⁾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¹⁴⁾도 위반한 것임.
- 아울러,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13)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4) 제 6 조(집행과 정산)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의 집행은 사무국에서 내부보고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사후관리) 1.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은 사무국에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접수, 지급 및 관련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 내 1인 이상을 기부물품 및 후원물품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중간발표(9.10) 후 조사내용**

- (2023년) 협회는 태안군에 배분된 40,302,000원 상당의 물품 중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자택으로만 배송된 30,157,800원 상당의 물품만을 '사적사용'으로 보고, 이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송부 (‘24.3.12, 5.14. / 현재 미반납)
- (2024년)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하여 후원사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
 -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¹⁵⁾되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이사회 기념품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시 하는 등 4,938천원 상당을 유용

<2024.1월~8월 국고보조사업 후원물품 배분 내역>

(단위: 개, 천원)

구분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남	협회		합계
								이사회	총회	
수량	100	300	200	465	100	188	272	45	13	1,683
금액	1,790	5,370	3,580	12,689	1,790	9,000	6,310	4,938	1,717	47,184

○ <협회 관계자 조사>

- “2023년 추가 후원물품은 담당 부서에서는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前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업체에 연락하여 배분하였고, 2024년에는 사무처장 및 협회장 지시로 추가 후원물품을 배분하였음.”

15) 제90차 이사회('24.2.6) 회의록 발췌

- 김○○ 회장 : … (추가후원물품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셔틀록이 100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타를 사면 요넥스에서 예를 들어 20타고 30타고페이백을 줘요. 그거 물품이 남은 걸로 지급을 했다구요. 그건 물품을 구입한건 아니에요 … (배분)기준은 행사에 저를 불러가지고 가면 '여기 열악합니다' 하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잘못했나요?

- (법률 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 동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체부 교부조건 및 협회 사업계획과 달리 현물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
 - 따라서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가 가능하며, 제41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추가 후원물품은 국고에 반납하거나 문체부 승인을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성질의 물품이고 (재물의 타인성),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지역 협회에 과대 분배한 행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용도의 사용 (불법영득의사)에 해당되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후원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문체부 조차> ①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② 징계요구(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

③ 「보조금법」 위반 사항 **후속조치***(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제재부가금)

* '23년 : 1.5억원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4.5억원(최대 위반액의 300%,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액 결정), '24년 : 금년 사업 정산 후 반환금액 확정

2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중간브리핑(9.10)

- 협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품 총 26억원('22년 8.6억원, '23년 8.8억원, '24년 8.6억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
- 이러한 행위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시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16) 위반
-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위반액 확정(2022~2024년 국고보조사업 수의계약 내역) : 26.1억원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계약건명	내용	계약금액	계
2022	승강제 리그	시합구	셔틀콕	247,020	863,941
		운영요원 피복	의류, 가방	103,500	
		대회 시상품	셔틀콕	48,831	
		소계		399,351	

- 16)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청소년 클럽리그	시합구	셔틀콕	187,950	
		운영요원 피복·참가품	의류, 가방	213,640	
		시상품	라켓	63,000	
		소계		464,590	
2023	승강제 리그	대회운영 지원물품	셔틀콕	214,800	879,720
			의류, 가방	164,150	
	소계		378,950		
	유청소년 클럽리그	대회운영 지원물품	셔틀콕	240,370	
의류, 가방			260,400		
소계		500,770			
2024	승강제 리그	대회운영 지원물품	셔틀콕	267,426	866,620
			의류, 가방	207,832	
	소계		475,258		
	유청소년 클럽리그	대회운영 지원물품	셔틀콕, 라켓	183,654	
			라켓	63,840	
			의류, 가방	143,868	
소계		391,362			
합 계					2,610,281

- **법률 검토** :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 2천만원 초과 계약에 대한 입찰 절차 위반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전액 환수의 근거가 됨.
 - 전액 환수 원칙은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용도 외 사용분에 한정하여 환수할 경우, 다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법령 위반의 유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문체부 조치> ❶ 징계요구(사무처장, 승강제리그 담당자, 유청소년클럽리그 담당자)

❷ 「보조금법」 위반사항 후속조치(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제재부가금)

❸ '25년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개선

- (사업지침 구체화) 사업물품구매 방식(자체계약방식 ▶ 조달청 입찰의뢰 원칙), 물품 배부방식(시·군·구종목단체 배분 ▶ 시도종목단체 1차 배분 후 시·군·구 배분)
- (현장교육·점검 강화) 보조금법 교육 실시, 암행 모니터링단 파견
- (실효성 있는 사업평가) 연도별 성과평가 및 사업수행 점검 결과 반영, 지원 여부 결정 등

2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중간브리핑(9.10)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7)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료 명목으로 약 16백만원 지급

■ 중간발표(9.10) 후 진행상황

- 위반액 확정 : 825만원

- 2022년 5월 16일부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이 개정('22.5.16 시행)되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게 된 만큼, 2022년 5월 16일부터 2024년 8월까지 지급한 금액

(단위 : 천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월	계
		1.1.~5.15.	5.16.~12.31.			
지급액	3,630	4,180	2,640	3,630	1,980	16,060

- 법률 검토 :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문체부 조치>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 (제14조의2제1항 관련)에 따라 법령 위반은 위반액의 2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가능.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액 결정

- 17) 제13조제4항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으로 주류 구매

-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¹⁸⁾ 하나, '2021년 국가대표
촌외훈련' 사업비 중 훈련식비로 주류 구입(12,000원)

(단위: 원)

집행일자	집행용도	보조세목명	거래처명	집행액	주류
2021.5.12.	4월 촌외훈련식비_석식	국내여비	대한배드민턴	10,778,000	12,000

- 법률 검토: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1호(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위반

<문체부 조치> 위반액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 (제14조의2제1항 관련)에 따라 용도외 사용분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가능.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액 결정

18)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상임심판 제도 미운영

중간브리핑(9.10)

-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임.
-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회는 2018년부터 매해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80백만원을 지원받았음.
 -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하여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음.
- 2023년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그럼에도 협회는 '24.2월 상임심판 제도를 폐지하였음.
- 문체부는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 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 파악 및 시정조치 예정

■ 중간발표(9.10) 후 추가 조사

① <협회 관계자 조사> 2024년 1차 심판위원회(24.2.16.)에서 2024년부터 상임심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

* 상임심판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협회 심판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2024년부터 상임심판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며, 상임심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계약 해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를 건의하기로 함

- “제도 미운영은 상임심판들이 협회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심판위원회 위원과 前 담당자 의견이 협회장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함.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및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에 대해 대한체육회 확인 후 실적 일수 인정되면 추가 수당 받으면 안 된다고 적용하니 상임심판들이 불만을 가졌을 수 있음.”
- “협회장 및 전무이사, 사무처장이 이사회 안건 상정에 부정적이어서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② <前 상임심판 의견청취(9.26.)> 문제 사항에 대해 의견소명 기회 부여 없이 제도 중단, 심판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등 위해 상임심판 유지 및 확대 필요

- “연구활동비 및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문제 발생 후, 협회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반납 등 조치를 이행하였음. 최근 소명할 준비를 하라고만 연락받고 구체적으로 의견소명 기회 부여도 없이 상임심판 제도가 중단되었음”
- “배드민턴의 경우 연 200일 넘게 대회가 열릴 정도로 정말 많음. 공정하게 시합이 치러져야 하기 위해 심판 수는 늘어나야 함. 전문성이 있는, 직업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에 대한 양성, 교육,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한국 심판의 입지가 높지 않은데, 전문성과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상임심판 제도가 유지되고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함”

③ <대한체육회> 협회의 상임심판 제도 미운영 의견에 대해 입장 재고 및 미운영 시 의사회 의결 절차 준수 요구(4회/3.28, 4.8, 5.10, 8.27.)
→ <배드민턴협회> 이사회 개최 및 보고 예정임을 공문으로 회신(4.6.)
※ 현재까지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결 실적 없음

④ 문체부 검토

- (절차 위반) 협회는 상임심판 제도 미운영에 대해 심판위원회* 심의(24.2.16.)만을 거쳐 대한체육회에 통보(24.3.13.)한 후, 당초 이사회 의결을 받은 상임심판 사업계획을 이사회 의결 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심판위원회는 의결 기능이 없으며,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자문하는 기구¹⁹⁾에 불과함.
 - 협회 정관²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대안 부재) 또한, 협회는 종목 발전을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일부 문제를 이유로 제도 중단을 결정하고, 제도 중단 및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일부 상임심판의 허위실적 제출 등 일탈행위를 이유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해당 내용을 이미 ‘22년부터 인지²¹⁾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다가 상임심판 제도 미운영을 결정

<문체부 조치> 상임심판 재개 요구

- 협회 측 주장대로 일부 상임심판이 수당 및 출장여비 중복 등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병행
- 일부 개인의 일탈을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

19)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는 배드민턴 경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과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0) 정관 제14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21) 2024 제1차 심판위원회 회의록(‘24.2.16.): 김○○, 우○○ 심판은 2021년 5월에 연구 활동으로 활동실적 5일 인정 받은 자료는 2022년 9월에 동일 자료로 활동 일수를 재신청하여 담당자가 제지하였고… 활동일수 조작 건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발견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실시하여 못하였습니다.

4 협회 운영실태

1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임원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

중간브리핑(9.10)

-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정관22),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음(행동강령23).
-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 24)을 이용하여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유치금의 10%, 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존재

<일부 임원(2명)의 인센티브 수령현황('22~'23년)>

관련사업	후원사	총유치금액	인센티브	수령자
2022 코리아국제오픈	(주)샤워플러스	80백만원	8백만원	김00(부회장)
2022 코리아마스터즈대회	요넥스	150백만원	15백만원	김00(전무)
국가대표의류 광고유치	에쓰-오일 토탈에너지스유통(주)	150백만원	15백만원	김00(전무)
2023 월드시니어대회	(주)동승통상	300백만원	30백만원	김00(전무)
합계		680백만원	68백만원	

- '2023년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하였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종 3억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천만원을 수령하였음.

22) 정관 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3) 행동강령 제2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명목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특정 법인 등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4) 제18조(후원사 유치에 따른 보상) 1. 협회의 각종 사업 및 국가대표팀 후원을 위한 후원사를 유치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에게 유치 후원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 중간발표(9.10) 후 추가 조사

- (추가 파악) '2023년 월드시니어대회'는 전무이사가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하여 성공보수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회는 실질적인 기여자는 전무이사가 아니라 회장이라는 입장임.**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회장이 다시 후원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 답변) 회장님과 전무이사가 6억원을 후원받아 왔습니다. 인센티브로 회장이 3천만원, 전무이사가 3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장님도 받아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회장님은 뭐 그런걸 받느냐고 하여, 인센티브를 다시 협회에 후원하는 형태로 처리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 전무이사에게 지급했던 금액 중 2천 3백만원은 회장의 이름으로 다시 협회로 입금되었음. 이를 입증하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율 22%을 적용한 세후 지급액임.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231107	김○○ 전무	46,800,0000*	-	인센티브 지급
20231122	김○○ 전무	-	23,000,000	김○○ 회장 기부금

* 전무이사에게 6천만원의 78%(원천징수율 22% 제외)인 4천 6백 8십만원 지급

- 이 과정에서 전무이사는 본인의 인센티브 외 회장의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5,720,000원)도 납부하게 되었음.
- 또한, 처음부터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면 협회가 전무이사에게 해당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2023년 11월 7일 전무이사의 계좌로 지급한 후 2023년 11월 22일 다시 입금받았음.
- 협회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3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전무이사에게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다시 협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2천 3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7백만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률 검토) 「정관」은 협회의 최고 규정이므로 하위규정인 마케팅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 임원들이 관여하여 만든 마케팅 규정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익충돌 방지 취지를 훼손.
- 정관 및 임직원 행동강령과 마케팅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마케팅 규정(제2조)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에 임직원은 제외된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음.
- 배드민턴협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음. 임원에게 지급된 성공보수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체부 조치> ①협회는 당사자에게 해당액(부회장 624만원, 전무 4,680만원) 환수
 ② 전무이사가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 관련 과세관청 통보
 ③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마케팅 규정 개정 요구(임직원의 성공보수 폐지)

2 회장과 전무가 2024년 설날 명절상여금(보수) 수령

- 협회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2024년 설날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직원뿐만 아니라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회장과 전무이사에게까지 지급

<협회 명절(설날) 상여금 기프트카드 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도	캐시백 사용액	수령자	금액
2021	2,400,000	직원 12명	200,000
2024	6,300,000	회장(김○○)	1,000,000
		전무이사(김○○)	500,000
		직원 16명	300,000

<문체부 조치> 협회는 당사자에게 해당액(회장 1백만원, 전무이사 50만원) 환수

3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

중간브리핑(9.10)

- (후원금) '21년부터 '24.8월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2023년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백만원이 유일함.
 -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급금) '21년부터 '24.8월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약 3억 3천만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항공료 등) 파악 중
 -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15만원을 받음.

<10백만원 이상 이체된 임원(9명)>

임원	비고	금액	임원	비고	금액
김○○(*)	전무	70백만원	김○○	회장	15백만원
김○○(*)	부회장	37백만원	김○○	이사	15백만원
정○○	이사	22백만원	서○○	이사	15백만원
조○○	이사	18백만원	김○○	부회장	15백만원
김○○	이사	16백만원			

* 김○○ 전무이사, 김○○ 부회장의 수령액은 '후원사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

- 방만 운영, 불요불급한 수당 여부 파악 예정

■ 중간발표(9.10) 후 추가 조사

- '21년부터 '24.7월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협회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은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국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등 포함) 등 약 4억 5천만원임.

-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정관²⁵),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협회는 제82차 이사회("21.3.27.) 의결을 근거로 전무이사에게 사무실 방문결재 및 업무상 회의참가시 회당 15만원의 회의참가비와 별도의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 실비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만큼,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회당 15만원씩 지급하는 회의 참가비는 사실상 보수에 해당함. 협회는 전무이사에게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회의참가비로 30,450,000원을 지급하였음.
 - 아울러, 현행 세법상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개인)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하지만, 협회가 전무에게 지급한 회의참가비 총 30,450,000원 중 17,850,000원("21.4.19.~'23.4.25.)은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음.
 - 협회에 확인 결과, 이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2023년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1천만원 이상 지급받은 임원은 11명이며, 전체 임원 지급액(451백만원)의 약 77.6%를 차지함.

<10백만원 이상 이체된 임원(11명)>

임원	비고	금액	임원	비고	금액
김○○(*)	전무	98백만원	박○○	감사	20백만원
김○○(*)	부회장	77백만원	김○○	이사	15백만원
김○○	회장	41백만원	서○○	이사	15백만원
정○○	이사	22백만원	홍○○	이사	13백만원
조○○	이사	18백만원	김○○	부회장	11백만원
김○○	이사	16백만원	합계		350백만원

* 김○○ 전무이사, 김○○ 부회장의 수령액은 '후원사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

<문체부 조치> ① 전무이사 소속팀에 관련 사실 통보

- 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 파악 후 회신 요청

② 세금 미징수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 통보

③ 협회는 임원의 자체예산 사용(수당, 국내외 출장비,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문체부 보고

25) 정관 제24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4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

중간브리핑(9.10)

-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²⁶⁾」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시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음.
-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23.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함.
-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

■ 중간발표(9.10) 후 추가 조사

- 협회는 국가대표 후원계약 및 관행적으로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대회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²⁷⁾에도 불구하고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 제척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

(사무처장 답변) 기존 업체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9년부터 ○○○셔틀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해당 이사가 와서 공인구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미 예전부터 ○○○ 셔틀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23년 2월에는 부속합의서에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함.

<문체부 조치> 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해제 요구

② 경고 요구(사무처장, 담당 과장)

- 26) 제6조(공인에 대한 제척)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해당 회원 종목단체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 아니되며,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는다.
- 27) 2021년 8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협회의 전 국가대표 후원사였던 ○○社は 요넥스 셔틀콕을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구로 단독 지정하여 사용하는 점에 대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 및 협회에 문제 제기한 바 있음

5 후원물품 관리 부실

1 국가대표 후원물품

중간브리핑(9.10)

- 협회는 '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하여 연도별 입고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
- 국가대표선수단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 중간발표(9.10) 후 추가조사

- 국가대표 후원물품은 후원사에서 직접 국가대표팀에 지원하고 남은 잔여 물량을 협회에 이관, 협회 운영 및 지역협회 지원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출고 수기관리만 하고 있어 입고고 시 내부 공식적인 절차(공문 등)는 확인되지 아니함²⁸⁾.
- 또한, 협회는 국가대표 후원물품 이외에 기부·후원받은 후원물품²⁹⁾에 대한 입고·출고 및 재고 관리대장을 별도 구비하지 않고, 주기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배분 및 입·출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음

<문체부 조치> 협회 물품 재고 및 입·출고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28) 2023년도 국가대표 셔틀콕의 경우, 후원사 내부 사정으로 1,500타가 미입고 되었으며, 국가대표팀에 지원(5,075타)하고 남은 잔여 2,425타를 협회에 이관, 대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등으로 1,100타 사용하였으나, 미입고된 내역은 관리대장에는 미적시

29) 22~24년 국가대표 후원물품 이외의 후원물품 현황

구분	2022	2023	2024.8월	합계
물품수량 (개, 타)	3,240	3,850	1,000	8,090
금액 (백만원)	47	102	27	176

② 지역 배분 후원물품

- '21년부터 '24년까지 협회에서 각 지역에 보낸 지원물품을 확인해 본 결과(지역배드민턴협회 등이 문체부에 자료 제출), 국고보조사업과 무관하게 물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협회장 명의로 9,386개의 물품이 배분되었으나, 다수의 경우 내부 공식적인 절차(공문 등)는 확인되지 않음.

<2021~2024 지역배드민턴협회 물품 수령 현황>

(단위: 개)

구분	승강제				유청소년				보조사업 외				
	2022	2023	2024	합계	2022	2023	2024	합계	2021	2022	2023	2024	합계
서울	미제출				미제출				111	1,009	464	199	1,783
부산	-	1,096	1,840	2,936	245	205	955	1,405	-	-	-	-	-
대구	-	-	-	-	-	-	-	-	-	-	-	200	200
인천	-	-	992	992	-	-	-	-	-	-	-	200	200
광주	-	-	-	-	-	-	-	-	-	-	-	-	-
대전	미제출				미제출				-	-	-	50	50
울산	-	358	538	896	460	388	-	848	-	-	200	-	200
강원	-	-	1,120	1,120	-	-	764	764	-	-	-	1,000	1,000
경기	-	-	876	876	미제출				-	-	-	200*	200*
충북	-	-	2,450	2,450	-	-	2,314	2,314	-	-	420	60	480
충남	3,340	8,430	6,595	18,365	905	2,991	3,727	7,623	-	517	1,461	1,041	3,019*
경북	미제출				미제출				-	-	100	-	100
경남	미제출				미제출				-	-	-	123	123
전북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전남	4,321	9,874	4,968	19,163	5,353	7,532	5,539	18,424	-	-	900	-	900
제주	1,896	2,030	1,424	5,350	653	807	573	2,033	-	426	400	305	1,131
세종	-	-	170	170	-	-	266	266	-	-	-	-	-
합계	9,557	21,788	20,973	52,318	7,616	12,333	14,522	34,471	111	1,952	3,945	3,378	9,386

* (경기)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장소 제공 대가: 셔틀콕 200타 포함

** (충남) 대회 우승 상품 및 배드민턴협회 표창식: 셔틀콕 300타, 라켓 31개 포함

- 특히, '23.12월 강원도에 후원한 1,000타의 셔틀콕 중 300타는 협회 재고 물품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나, 협회 물품관리 대장에서 확인되지 않음
- 협회는 충청남도 여성부(○○○부회장)에 셔틀콕 100타, 당진시 협회(○○○이사)에 셔틀콕 300타를 용도 지정 없이 배분하였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현재 충청남도협회에서 보관하고 있음³⁰⁾

<문체부 조치> 승강제리그/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정산 시 투입 물량 확인 후 조치

30) 충청남도협회 사무국장 진술: 당진, 논산에 대회가 있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별도 셔틀콕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나, 물품이 사무실로 배송되지 않고 개인 집, 사무실로 배송되었으며, 현재 보관 중에 있음

6 협회 직원 국내대회 지원 출장 시 일비(수당) 과다 지급

□ 협회 「여비 및 항목별 지급 기준」

구분	국내대회(국제대회 개최 포함)	국내출장
숙박비	실비 :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대회 개최지역 사정에 따라 실비 집행한다.	특별시 ₩100,000, 광역시(특별자치시.도 포함), ₩ 80,000, 그 외 지역 ₩70,000 ※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사정 및 시기에 따라 실비 집행할 수 있다.
식비	₩10,000(1인 1식)	₩10,000(1인 1식)
교통비	별표1 기준에 따름	국내대회 지급과 동일 (단, 인천공항은 실영수증 별도 정산)
일비	담당관(부장)이상 ₩150,000 - 기타 운영요원 ₩100,000 - 심판비 : 1급(₩120,000), 2급(₩110,000), 3급(₩100,000) ※ 경기시간에 따른 심판비 추가 지급 사항 - 10시간 이상 : 책정금액 + ₩20,000 ※ 단, 대회별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20,000(1일)

□ 문제점

- 협회는 일반적인 국내출장 시 일비 2만원, 국내대회 지원 출장 시 일비 10만원(담당관/부장 이상 15만원) 지급
-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의미하는데, 일반 국내출장에 비해 5배 이상의 규모로 지급하는 대회 지원 출장의 일비는 여비가 아니라 ‘수당’ 성격.
- 협회도 국내대회 지원 일비를 비과세 항목인 일반 출장의 일비와 다르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외부 운영요원인 심판에게도 10만원~12만원을 일비(수당)로 지급하고 있음.
- 국내대회 지원 출장과 일반 국내출장 일비를 달리 지급할 합리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체부 조치> 시정 요구

- 국내대회 지원 출장과 일반 국내출장 일비를 달리 지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초과근무수당 인정

7 협회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 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간담회 등)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집행액) ② 23시 이후 사용은 제한하며, 불가피하게 사용 시에는 사유를 제출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 ③ 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2.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성명, 총지출액)

제7조(업무추진비 분할결제 금지) 업무추진비 결제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 결제 할 수 없다.

[별표1]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문제점

① 협회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 협회에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1년~'24.7월) 중 회장과 전무이사 등 임원이 사용한 금액은 59,255,650원임.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계
사용금액	1,669,500원	10,618,000원	16,485,300원	30,482,850원	59,255,650원

- 해당 내역 중 협회가 **충남 태안**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였으나 내부 문서와 불일치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역 존재

거래일자	거래금액	가맹점명	구매품목
2023.8.31.	1,700,000원	A수산	게장
2023.8.31.	850,000원	A수산	게장
2023.10.25.	714,000원	B수산	꽃게, 새우
합계	3,264,000원		

- 협회는 A수산에서 사용한 2,550,000원은 내부 문서(업무협약)와 달리, 선물 목적으로 지역특산물을 구매한 것이라고 답변³¹⁾.
- B수산에서 사용한 714,000원은 내부분서에는 사용일시 및 장소가 10월 12일 전남 화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카드 결제 일시 및 장소는 10월 25일 충남 태안으로 서로 상이함.
 - 협회 직원은 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 당일 법인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다른 날 결제한 것이며,
 - 전남 화순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만찬에서 선수단에게 싱싱한 해산물을 먹이고자 충남 태안에 있는 B수산에서 해산물을 포장하여 전남 화순에서 식사를 한 것이라 답변함³²⁾.

② **‘사용제한 업종’ 업무추진비 사용**

- 사용제한 업종*(주점 등)이거나 사용제한 업종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21년부터 '24.7월까지 약 547만원 사용
 - 협회는 해당 장소에서 주류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음.
 - * 00집('23년 334,000원), 000일, 000포차('23년 1,127,360원), 00포차 00번('23년 800,000원), 00포차00번('23년 753,000원), 00포차('24년 474,000원) 등

31) 내부결제 문서에는 '23.8.31.에 회장 및 지역협회 회장 등 11명과 사무처 직원 17명, 총 28명이 충남 태안군 음식점에서 협회 사업 운영 관련 업무 논의를 하고 업무추진비 255만원을 카드결제'했다고 되어 있으나, 담당자 확인 결과 관계자 및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역특산품을 선물한 것이며 해당일에 사무처 직원의 출장 등은 없었다고 함.

32) '23.10.25. 충남 태안 수산물 가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였으나 관련 회의 등 내부결제 문서 없이 회장님 대회 활동 및 수행 건으로 처리되었음. 사무처 담당자 확인 결과, '23.10.12.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만찬을 위해 태안에 있는 수산물 가게에서 해산물을 구매(포장)하여 전남 화순 음식점에서 식사하였다고 함. 해산물 구입일인 10.12.에 법인 카드가 없어 결제하지 못하고 10.25.에 결제하였음

③ **심야시간(23시 이후) 결제**

- '21년부터 '24.7월까지 약 451만원 결제
- 협회는 ○○○비어 83,400원은 법인카드 오집행으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내역은 회의, 대회준비가 늦게 끝나거나 규정 미숙지로 23시 이후 집행된 것으로 답변

(단위: 원)

승인일자	승인시각	거래금액	가맹점명
2022.12.2.	25:11:00	83,400	○○○비어
2024.3.22.	26:44:00	575,000	○○○○○○○○○○○○요
2021.4.3.	23:17:49	268,000	○○○곡
2023.7.23.	00:20:36	168,000	○○레
2021.5.15.	23:02:28	116,300	○○○○스
2023.7.21.	23:04:39	131,000	○○락
2023.9.9.	23:05:33	468,000	○○장
2023.11.5.	23:06:25	519,000	○○○○○오돌뼈
2023.9.16.	23:12:50	147,300	○○○○터
2021.5.15.	23:14:00	250,000	○○○○○○○○기
2022.7.18.	23:20:39	48,000	○○기
2023.9.10.	23:33:54	274,000	○○○○후돼지
2023.5.27.	23:34:20	396,000	○○○곱창
2023.11.6.	23:37:13	149,400	○○○뚜경
2023.7.20.	23:42:59	11,000	○○○구나
2022.1.17.	23:04:25	67,300	○○샵
2021.11.8.	23:05:53	55,000	○○○○○감자탕
2021.11.26.	23:07:44	40,000	○○감자탕
2023.4.14.	23:08:36	217,000	○○○○갈비
2024.2.16.	23:23:04	105,000	○○족발
2023.3.2.	23:33:14	259,000	○○○일
2023.7.31.	23:41:31	116,000	○○○○○○○○○○구이
2022.5.14.	23:53:53	47,000	○○순대
합계		4,510,700	

<문체부 조치> ①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협회 기관 경고
 ② 업무추진비 사용 시 규정 준수 요구

8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1 상위 규정에 위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① (구성)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³³⁾」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³⁴⁾」은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총회에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반면,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정관과 규정 불일치)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능)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기능으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협회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축소³⁵⁾**하여 정하고 있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38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정관 개정 에 관한 사항

33)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34)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35) 2023.7월 정기종합감사 시 대한체육회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협회 규정 제·개정 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시정 요구했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2024.2.6. 제90차 이사회)하여 기능 중 ‘협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협회 정관 개정

- 체육회 규정과 회원단체 규정이 상이한 경우 **체육회의 규정이 우선**³⁶⁾하고, 회원단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 축소'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음

<문체부 조치>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

2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중간브리핑(9.10)

- 협회의 징계를 소관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³⁷⁾가 있음.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21.10월, '23.11월)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³⁸⁾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³⁹⁾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였음.

<문체부 조치> 불공정한 결정을 주도한 위원 해촉 조치 요구

36) 제43조(규정 제·개정)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37)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제9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체육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38) 2023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23.11.15) 회의록 발췌

• 이○○ 위원 :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김○○ 부회장 중학교때부터 가르치고 키운 사람들 이에요 저희들이.** 엘리트 출신으로 50년, 60년을 배드민턴에 몸담고 있었는데 좀 명예롭게 나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결과 : 징계 찬성 4명, 반대 5명 / 부결)

39) 지도자 김○○ 아동학대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거로 한 신고로 지도자 등록 정지('21.10.21.) 후 김○○이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해제. 해당 학부모로부터 추가 민원 2회 제기 후인 '22.2.3.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

9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및 절차 누락

□ 협회 「정관」 및 「처무규정」

<정관>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제50조(사무처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처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처무규정>제5조(인사위원회 설치) ①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 ③ 직원의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 문제점

- 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처무규정 제7조)하여야 하나, 총회 대의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⁴⁰⁾(23.6.7. 인사위원회)

* 강원도배드민턴협회장,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장,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

- ② 신규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처무규정 제8조)을 거쳐야 하나, '2211월 이후 신규 채용한 15명 중 5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누락⁴¹⁾

<문제부 조치> ①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시정 요구

② 인사위원회 의결 누락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및 기관경고

40)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국민권익위원회, '2024.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p.29)

41) 담당자 문답 : 신규 채용을 담당할 리그운영팀 직원에게 물어보니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나 서면결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임.

□ 조사 개요

- (조사 경위) 회장의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노무법인을 통해 협회 사무처 조직문화 진단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 *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갑질·폭언” 폭로 나왔다(세계일보, '24.8.13.) 등
- (조사자 및 기간) 외부 전문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24.9.9.~10.11.
- (조사대상 및 방식) 신고인(협회 사무처 직원*) 대상 대면조사
 - 피신고인(회장) 조사 미실시(수차례 요청에도 당일 취소 및 거부 등으로 조사 불가)
 - * 사무처 전 직원 18명 중 17명 실시, 1명 제외(휴가·출장 등으로 조사 불가)

□ 조사 결과

- 피신고인(회장)이 신고인들에 대하여 ▲2024년 4월 초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수행하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 근로기준법 및 신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준수 필요. 기존 언론보도 내용을 넘어서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범위에 해당하여 비공개

<문체부 조치> 관계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